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소영,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오한아,
이광성, 이호대, 최영주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2항제8호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100분의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 “다둥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로,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를 “경우”로,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다둥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로,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를 “경우”로,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p> <p>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8. <u>다둥이</u>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u>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u> : 월 사용료의 100분의 <u>30</u> 감면</p> <p>9. · 10.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u>다둥이</u> ----- <u>경우</u> ----- ----- <u>50</u> 감면</p> <p>9. · 10.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051900000004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안광석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5. 19.

회신일 : 2021. 05. 27.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사용료 등) 제2항제8호를 개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경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91,479천원

1)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18,296천원으로 연평균 1,591,479천원임

2) 추계의 전제

- 감면대상(3자녀 이상→2자녀 포함) 및 감면율(100분의 30→100분의 50) 개정에 따른 추가 감면 금액은 기존 3자녀 이상 사용자의 감면율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금액과 2자녀 사용자의 감면금액으로 구분하여 추계

- 2자녀 사용자의 감면금액은 3자녀 이상 사용자의 사용료에 3자녀 이상 학생수 대비 2자녀 학생수 비율(539.5%)과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

- 3자녀 이상 사용자의 사용료(109,852천원)는 2020년 4분기 시립청소년센터 사용료 감면 자료(평생교육국)를 참고하여 산출

* 3자녀 이상 사용자의 감면금액(2020년4분기) : 8,239천원(사용료의 100분의 30)

* 3자녀 이상 사용자의 사용료 : 27,463천원 × 4분기 = 109,852천원

- 3자녀 이상 학생 수 대비 2자녀 학생수 비율(539.5%)은 서울시 초등학교 다자녀 학생 현황 자료(여성가족정책실)를 참고하여 산출

* 3자녀 이상 학생수(60,211명)/2자녀 학생수(324,845명)

〈서울시 초등학교 다자녀 학생 현황〉

출생순위	(단위:명)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합계
1째	36,150	35,640	35,226	37,962	39,404	36,445	487,865
2째	25,492	25,422	24,742	26,616	27,547	26,537	324,845
3째	4,865	4,544	3,986	4,484	4,458	4,098	54,514
4째	430	438	320	369	331	275	4,849
5째	58	58	39	34	40	30	634
6째	13	6	14	11	7	5	137
7째이상	12	8	4	3	4	1	77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019.10.30.기준)

- 산출된 추가 감면금액과 추가 손실보전금액이 동일하다고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591,47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 (a)	-	-	-	-	-	-
세출	다등이 이용자의 사용료 추가 감면금액 (제8조제2항제8항)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소계 (b)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총비용 (b-a)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 추가 감면금액 = $\sum_{i=1}^5 (\text{연간추가감면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318,296천원

≙ 기존 3자녀 이상 사용자의 감면을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 금액
+ 2자녀 사용자의 감면금액

≙ 21,970천원 + 296,326천원

※ 기존 3자녀 이상 사용자의 감면을 변경에 따른 추가 감면 금액 : 21,970천원

= 기존 3자녀 이상 사용자의 사용료 × 변경 감면율 - 기감면금액

= (27,463천원×4분기) × 50% - (8,239천원×4분기)

= 109,852천원 × 50% - 32,956천원

※ 2자녀 사용자의 감면 금액 : 74,082천원

= 기존 3자녀 이상 사용자의 사용료 × 3자녀 이상 학생수 대비 2자녀 학생수 비율 × 감면율

= (27,463천원×4분기) × 539.5% × 50%

= 109,852천원 × 539.5% × 5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